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82호 2021. 2. 1.(월)

고 시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2
- 목포세라믹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3

공 고

- 2021년 빈집정비 지원 사업 공모 시행 공고----- 15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공보과 ☎ 061-270-8539

목포시 고시 제 2021-18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일

목 포 시 장

○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순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1	불종대길21번길 13-4	2021.2.1.	건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62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목포시 고시 제2021-20호

목포 세라믹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목포 세라믹일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 2. 1.

목 포 시 장

I. 산업단지 조성 개요 (변경)

1. 관리권자 : 목포시장 (변경없음)

2. 관리기관 : 목포시장 (변경없음)

가. 주소 :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1188-2)

나. 사업시행자 : 목포시장

3. 조성목적 (변경없음)

가. 「세라믹 종합 지원센터」를 구심점으로 세라믹산업의 거점화에 필요한 산업용지 확보

나. 지역사업구조 개선과 특화된 산업단지 조성

다.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및 고용창출로 서남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조성기간 (변경없음)

2008년 ~ 2014년

5. 사 업 비 : 217억원(시비 119, 지방채 98) (변경없음)

6.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618-64 일원

나. 면적 : 116,361.1m²

7. 조성과정 (변경)

- '08. 3. : 세라믹배후단지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준공
- '09. 6. 5. :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 '10. 11. 8. :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
- '10. 12. 20. : 실시계획인가 고시
- '11. 7. 22. : 투융자심사 승인
- '12. 1. 5. : 본공사 발주
- '12. 2. 27. : 책임감리용역 착수
- '12. 12. : 노출암 깨기
- '13. 1. 25. : 목포 세라믹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
(목포시 고시 제2013-132)
- '14. 12. : 목포 세라믹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
- '16. 7. 4. : 목포 세라믹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목포시 고시 제2013-132)
- '18. 12. 17. : 목포 세라믹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목포시 고시 제2018-191)

8. 분양계획 (변경없음)

구 분	총면적 (㎡)	분양가능면적(㎡)			조성 기간	조성 기관
		계	분 양	미분양		
계	116,361.1	95,268.9	39,226.8	56,042.1	2008 ~ 2014	목포시
산업시설	80,739.5	80,739.5	24,697.4	56,042.1		
지원시설	14,529.4	14,529.4	14,529.4	-		
공공시설	10,914.3	-	-	-		
녹지시설	10,177.9	-	-	-		

9. 입주계획 (변경없음)

구 분	입주업체수(예정)		면 적(㎡)
	계	입주업체	
향후계획	17개사	17개사	80,739.5

※ 입주업체는 분양결과에 따라 필지 분할 또는 합병으로 변경될 수 있음

10. 입지여건 (변경없음)

시 설 명	기반시설 현황(계획)
상 수	○ 계획 급수량 : 2,079.0m³/일 (생활용수 : 64.8m³/일, 공업용수 : 1,964.2m³/일, 소화용수 : 50.0m³/일) ○ 용궁배수지계통에서 삼진 일반산업단지로 연결되는 광역 상수도에 D=150mm관을 연결하여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
하 수	○ 계획 오수량 : 996.6m³/일 (생활오수 : 51.5m³/일, 공장폐수 : 945.1m³/일) ○ 생활오수 : 단지내 생활오수를 직접 오수관에 연결하여 산정중계펌프장을 거쳐 북항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함 ○ 공장폐수 : 각 공장에서 1차 처리 후 지구내 오수관에 연결하여 북항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함
폐기물처리	○ 본 산업단지 시설물 종업원 및 상근, 이용인구 등에 의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각 시설물별로 분리수거함 및 재활용 폐기물 수거함을 설치 ○ 총 발생폐기물 중 재활용량을 제외한 양 1.30ton/일에 대하여는 종량제처리 및 위탁처리
통 신	○ 전화수요량(회선) : 79 ○ KT목포지사 및 KT전남본부와 협의하여 단지내 ONU(초고속망 공급장치 기계실)을 설치하여 공급
에 너 지	○ 열 수요량 : 269.392Gcal/년 · 목포도시가스와 협의하여 입주업체의 도시가스 사용시기에 맞춰 공급할 예정 ○ 전력 수요량 : 59,999MWh/년 · 한국전력 목포지점과 협의, 북항변전소에서 필요전력을 인입 공급계획
도 로	○ 서해안 고속도로 연장선상 도로와 300m 인접
항 만	○ 목포신항만 (목포대교 경유 8km)
철 도	○ 목포역부터 → 단지까지(3km)

※ 2016. 6. 9. 목포 세라믹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시(목포시 고시 제2016-99호) 계획급수량(상수) 및 계획오수량(하수)의 변경용량이 기 관리기본계획 고시(목포시 고시 제2016-120호, 제2018-191호)에 누락되어 금회 반영함

II.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1. 기본방향 (변경없음)

- 가. 적극적인 입주기업 유치 및 지원활동 전개로 생산 활동 지원
- 나. 지역경제 기반을 육성하고 산업구조변화의 선도적 역할 수행
- 다. 업종별 규모 및 배치기준에 입각하여 업종별 집단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열별로 집단배치

2. 관리면적 (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고
계	116,361.1	100	
산업시설용지	80,739.5	69.4	
지원시설용지	14,529.4	12.5	
공공시설용지	10,914.3	9.4	
녹지시설용지	10,177.9	8.7	

3. 입주계획 (변경)

<기준>

가. 입주대상 업종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중 시멘트, 레미콘 관련 업종 제외
 - 23111, 23112, 23119, 23121, 23122, 23129, 23191, 23192, 23199, 23211, 23221, 23222, 23229, 23232, 23239, 23312, 23321, 23323, 23992, 23999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C20)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C25)

<변경>

가. 입주대상 업종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중 시멘트, 레미콘 관련 업종 제외
 - 23111, 23112, 23119, 23121, 23122, 23129, 23191, 23192, 23199, 23211, 23221, 23222, 23229, 23232, 23239, 23312, 23321, 23323, 23992, 23999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C20)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C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 전기장비 제조업(C28)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나. 입주자격 (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다. 입주 우선순위 (변경없음)

- 1순위 : 목포시와 MOU를 체결했거나 입주추천을 받은 업체로서 입주면적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 2순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체 (공고일 현재 본사와 공장의 소재지가 수도권인 기업체)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3순위 : 1순위 협력업체, 기타입주 희망업체

4.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 계획 (변경없음)

가.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로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
-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한 시설 및 건축물
- 공공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건축물 범위 외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 녹지시설구역
 - 산업단지의 미관, 공해저감과 근로자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녹지 및 공원용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

나.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붙임1

5. 업종별 공장의 배치계획 (변경)

<기준>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계	80,739.5	100.0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65,703.8	81.4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5,035.7	18.6	

<변경>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계	80,739.5	100.0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5,703.8	81.4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5,035.7	18.6	

6.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설치기관 :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2009. 1. 준공)

나. 운영내용

- 장비구축 : 특성화, 차별화된 산업화 핵심기반 구축
- 기술사업화 촉진 : 산학연 역량결집으로 사업화 기술개발 및 전문기업 육성
- 장비구축 : 특성화·차별화된 산업화 핵심기반 구축
- 인력양성 : 수요처 발굴지원 및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

III. 사후관리계획 (변경없음)

1. 관리목표 (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2. 세부관리계획 (변경없음)

가. 분양용지 관리

- 산업단지내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
- 입주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용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등 산집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다.
-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분양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코자 할 경우에는 분양 당시의 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장 등의 건설 미착공, 준공 불가능 인정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환수할 수 있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3 (산업용지분할기준)제2항의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동법 제15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 이상으로 한다.
- 다만, 인접(바로 옆 공장)한 부지에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용지 일부를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 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재분할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 해지)

나. 환경 관리

-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본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오·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이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 안전 관리

- 관리기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하여 안전 관리, 공해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음

라. 기반시설 지원

-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

IV.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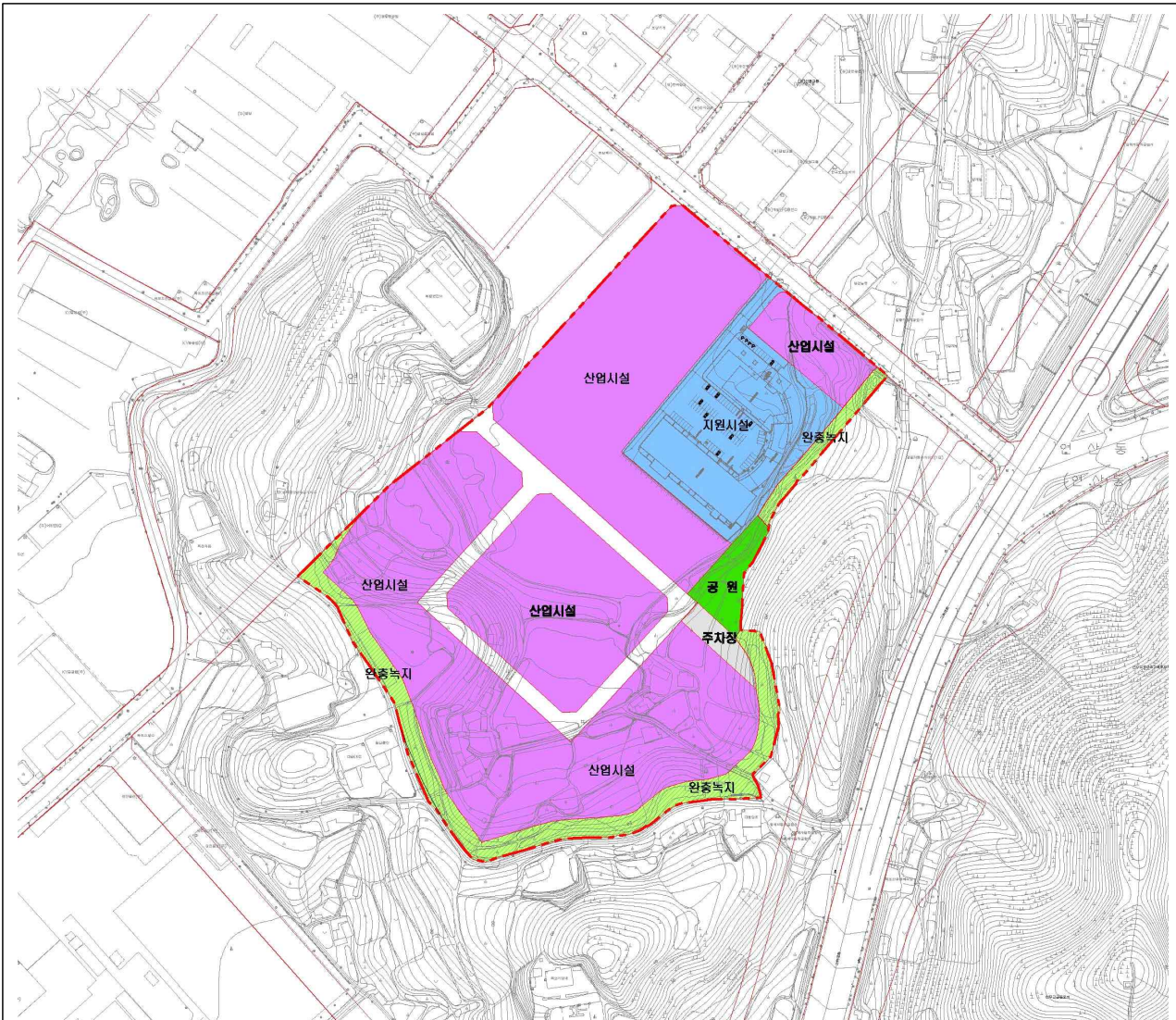
-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관리 지침」, 환경영향평가, 분양공고문, 분양유의사항,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관리함.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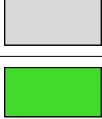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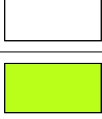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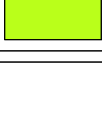
V. 행정사항(변경없음)

- 관련도서는 목포시청 지역경제과(☎061-270-3362)에 비치하고 일반인 열람이 가능합니다.

- 붙임 1. 용도별 구획평면도 1부.
2. 업종별 배치계획도 1부.
3. 분양대상 용지 필지별 위치도 1부.
4. 분양대상 용지 필지별 면적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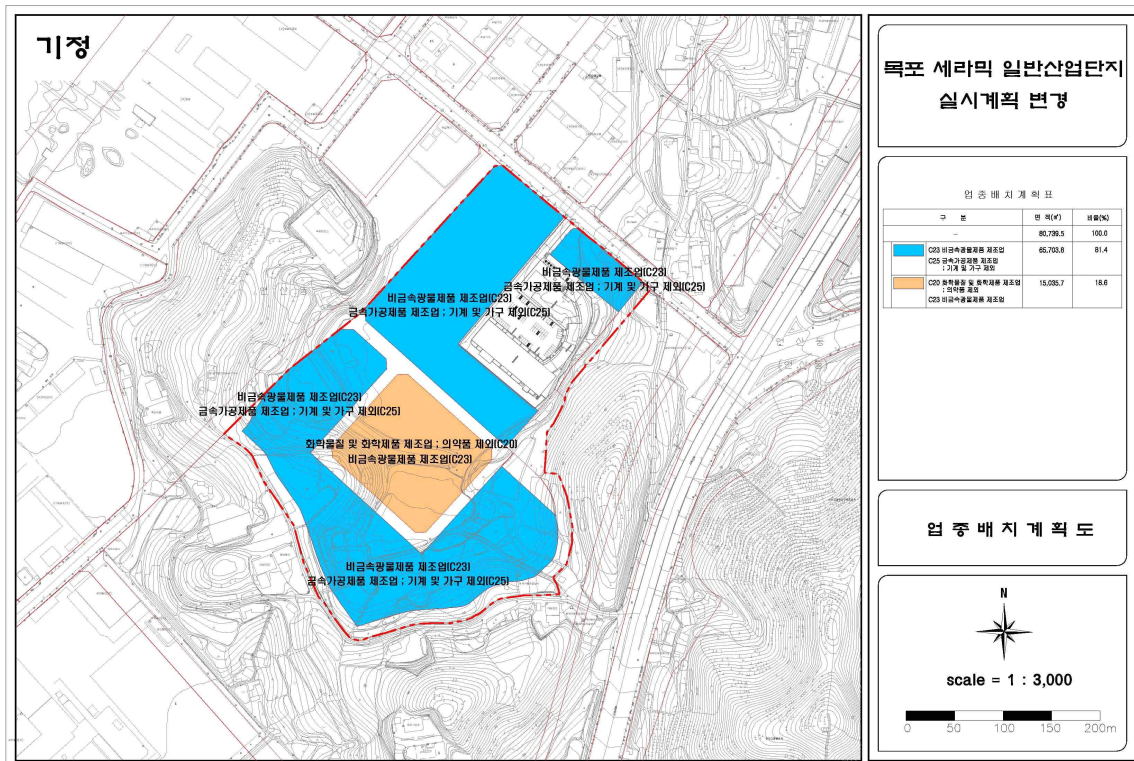
□ 용도별 구획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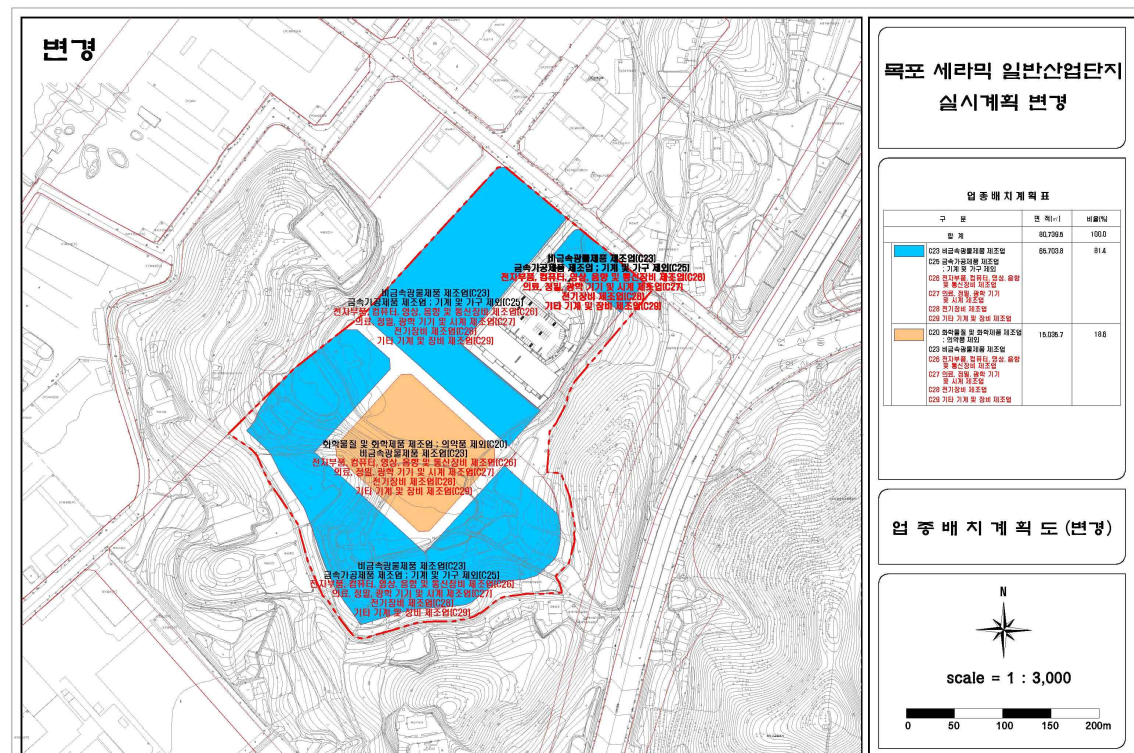
토지이용 계획도	구분		면적(m ²)	비율(%)
	총계		116,361.1	100.0
목포 세라믹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80,739.5	69.4
		지원시설용지	14,529.4	12.5
		주차장	1,119.6	1.0
		공원	2,150.4	-
		도로	7,644.3	-
		완충녹지	10,177.9	8.7

□ 업종별 배치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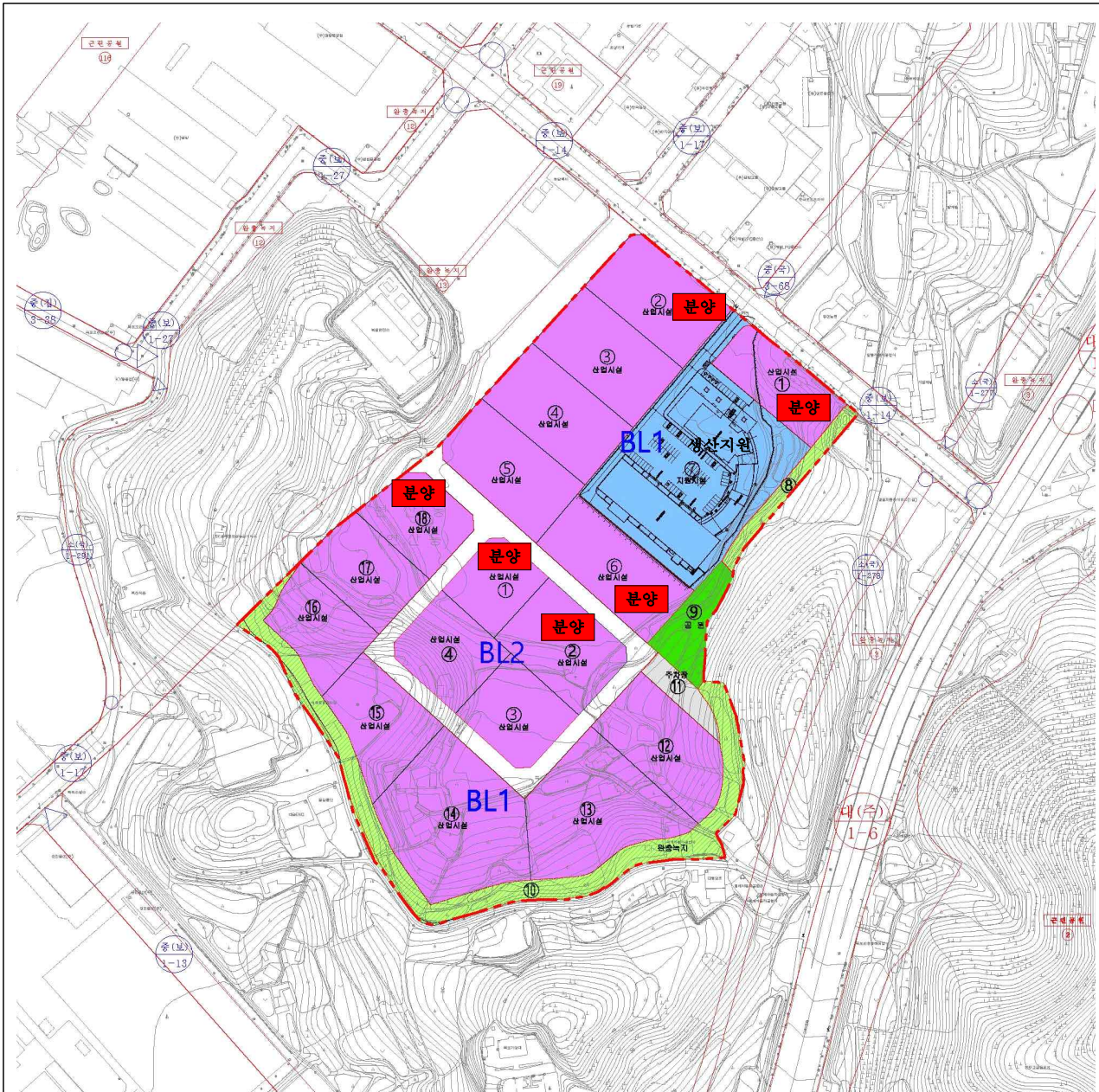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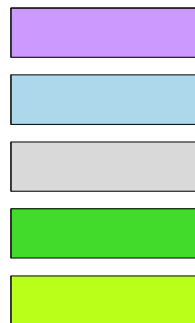
○ 변경



□ 분양대상 용지 필지별 위치도



토지이용
계획도



산업시설용지
세라믹지원센터
주차장
공원
완충녹지



0 50 100 150 200m

□ 분양대상 용지 필지별 면적

순번	획지(가필지)		면적(m ²)	예정공급가격(원)	비고
합계	17필지		80,739.5	21,683,179,350	
1	BL1	①	3,645.4	997,598,880	
2	BL1	②	4,891.5	1,312,467,710	
3	BL1	③	5,033.4	1,350,541,750	
4	BL1	④	5,008.5	1,343,860,680	
5	BL1	⑤	5,012.7	1,344,987,610	
6	BL1	⑥	5,130.0	1,376,461,080	
7	BL1	⑫	5,057.4	1,356,981,330	
8	BL1	⑬	7,493.4	2,010,599,110	
9	BL1	⑭	8,975.9	2,408,377,580	
10	BL1	⑮	4,369.1	1,172,299,430	
11	BL1	⑯	3,650.4	979,460,720	
12	BL1	⑰	3,920.0	1,051,798,720	
13	BL1	⑱	3,516.1	943,425,880	
14	BL2	①	2,837.2	761,266,150	
15	BL2	②	4,677.2	1,254,967,590	
16	BL2	③	3,738.8	1,003,179,860	
17	BL2	④	3,782.5	1,014,905,270	

목포시 공고 제 2021 - 152호

2021년 빈집정비 지원 사업 공모 시행 공고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1년 빈집정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1.

목 포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1년 빈집정비 지원 사업

나. 사업목적: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다. 사업량 및 사업비: 20동, 100백만원(시비100%)

라.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마. 사업내용: 시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 철거

2. 지원내용

가. 신청자격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 재산세 과세증명서, 매매계약서를 통해 사실상 소유를 증명한 자

나. 대상주택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 단독주택 우선 지원

다. 지원금액

- 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범위 초과시 자부담 발생)

라. 제외대상

- 법인 소유 건축물, 공공임대주택, 비주거용 건축물, 별장 등
- 빈집(무허가 건축물) 리모델링을 신청하는 경우 (단, 철거는 신청가능)
- 건축물에 압류, 근저당권(지상권 포함)이 설정된 경우
- 주 건축물을 제외한 창고 등 부속건축물만 철거하는 경우
- 건축을 위하여 철거를 신청하는 경우
- 목포시 내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타 시·군 거주자

마. 우선순위

- 주택노후도 및 주거환경 저해요인(붕괴우려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빈집
- 주요 간선도로변 빈집
- 건축물 용도(주택우선 지원)

3.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1. 2. 1. ~ 2. 26.

나. 공 고 : 목포시 홈페이지

다. 신청방법 : 빈집이 위치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빈집정비 사업 신청시 소유자가 직접 신청(원칙)

라. 대상자 선정

※ 목포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이 후 대상자 확정

마.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빈집정비 지원 사업(철거, 리모델링) 동의서 각 1부.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4. 선정결과 통보

가. 시기 : 2021. 4월 중

나. 방법 : 선정자 개별통지

※ 선정 통보후 선정자가 '21년 6월말까지 빈집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빈집정비 포기 ⇒ 후순위자(대기자) 선정

5. 사업비 지급 및 정산서 제출

가. 선정자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나. 사업완료시 사업비 집행내역 관련서류와 정산보고서 제출

6. 기타 참고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과 보조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행정과(☎061-270-35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